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5944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구합6224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7.
판 결 선 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재산세 75,640원 및 지방교육세 7,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2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중 준공공임대주택이 1세대만 있더라도 당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의 준공공임대주택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제31조 제3항에서 임대주택 등을 2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재산세 등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1조의3 제1항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31조 제3항보다 재산세 등 감면의 이익을 더 크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은 임대주택 등을 2세대 이상 임대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관한 제31조 제3항보다 재산세 등 감면의 이익을 더 크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우선 그 문언상으로도 '2세대 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규정 취지와 체재,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이 임대주택 등을 2세대 이상 임대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관한 재산세 등 감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감면의 이익을 더 크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경우인 제31조의3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5

1항을 폭넓게 적용하도록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만약 1인이 임대하는 2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중 1세대만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취지였다면 입법기술상 그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이 그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